



제1687호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1 9 5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2
- 공 고 제 1 2 2 1 호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안) 입법예고 기 업 지 원 과 4
- 공 고 제 1 2 2 2 호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조정지가 결정, 공시 토 지 정 보 과 17
- 보 건 소 공 고 제 5 1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 품 위 생 과 19
- 보 건 소 공 고 제 5 2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 품 위 생 과 21
- 보 건 소 공 고 제 5 3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 품 위 생 과 23

고 시

- 고 시 제 5 6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25
- 고 시 제 5 7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28
- 고 시 제 5 8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31
- 고 시 제 5 9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새남촌 공영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 시 재 생 과 33
- 고 시 제 6 0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만월1호 공영주차장)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 시 재 생 과 35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195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무단전출,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년 6월 17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2.6.17. ~ 2022.7.4.
3. 공 고 대 상 : 77소6741 외 5대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 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발송일자 (1,2차)	미배달사유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비 고
1	2022-00069	77소6741	로디우스	고잔동731-6 장인가구 앞	이*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4*, 91*호(구월동, 파티마오피스텔)	2022.4.11.~2022.4.26. 2022.4.27.~2022.5.12.	기타 배달완료	2022.4.5.	(주)인천폐 차사업소	032-814-7077	
2	2022-00076	35서5987	원스톱2.0 SDi젤	논고개로208번길3 0 세림빌 앞	최*용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00*-*0(연다산동)	2022.4.27.~2022.5.12. 2022.5.23.~2022.6.7.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2022.4.20.	(주)인천폐 차사업소	032-814-7077	
3	2022-00080	18우5178	싼타페(SA NTAFE)	구월동1227-8 나랑빌라 앞 노상주차장	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23*번길 4*, 30*호(구월동, 나랑빌라)	2022.4.27.~2022.5.12. 2022.5.23.~2022.6.7.	기타 기타	2022.4.19.	(주)한신편 차	032-590-6900	
4	2022-00084	06부2607	토스카 2.0 DOHC	논현동 734 모두병원 뒤 노상주차장	김*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3, *층 **4호(논현동, 신성프라자)	2022.5.3.~2022.5.18. 2022.5.23.~2022.6.7.	기타 기타	2022.4.26.	(주)인천폐 차사업소	032-814-7077	
5	2022-00089	인천32바 1660	쏘나타	청능대로468번길 고고팩토리 인근 노상주차장	유*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9* 11*동 150*호(논현동, 논현주공아파트)	2022.5.3.~2022.5.18. 2022.5.23.~2022.6.7.	기타 기타	2022.4.28.	(주)한신편 차	032-590-6900	
6	2022-00090	35주7007	SM5	에코중앙로163 에코메트로 7단지 지하 2층 42 기동 옆	이*혁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5*, 1*동 20*호(가좌동, 가좌빌라)	2022.5.3.~2022.5.18. 2022.5.23.~2022.6.7.	기타 폐문부재	2022.4.28.	(주)한신편 차	032-590-690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221호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2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필수업무종사자에대한 정의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 : (안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
- 기본계획이 아닌, 필수업무종사자를 위한 지원계획은 재난 발생시에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 : (안 제6조)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 : (안 제8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7층 기업지원과
- ☎ 453-2695, FAX 453-5169)

4. 참고자료

- 조례 개정안 : 별첨
- 법 적 근 거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필수업무종사자에대한 정의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 : (안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
 - 기본계획이 아닌, 필수업무종사자를 위한 지원계획은 재난 발생시에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 : (안 제6조)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 : (안 제8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 본 문 : “별첨”
-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 참고자료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1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를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4조 중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본계획수립 등)”을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등)”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중 “남동구 필수노동자”를 “재난 발생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로, “기본계획”을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필수노동자”를 각각 “필수업무 종사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필수노동자”를 각각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필수노동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으로, “지원에 필요한”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 중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u>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	<u>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 필수 업무-----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이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대중교통 운전자, 의료·사회
복지·돌봄 종사자, 물류·배
달업 종사자 등 사회기능 유
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
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
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구청장이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필수업종
의 남동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
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
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

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
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
신이 아닌 다른사람의 사업
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
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

-----.

제4조(적용대상) -----

----- 필수업무-----
----- 필수업무 종사자-----
-----.

제5조(실태조사) ① ----- 필수
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

우 남동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
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
장은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생 략)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
에 필요한 사항

4. (생 략)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
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
원계획 등) ① -----
--- 재난 발생시 남동구 필수
업무 종사자 --- 남동구 필수
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
원계획”이라 한다)---.

② 지원계획-----
-----.

1. 필수업무 종사자 -----

2. (현행과 같음)

3. 필수업무 종사자 -----

4. (현행과 같음)

③ ----- 지원
계획-----

--.

제7조(지원 사업) ----- 필수업
무 종사자 -----

-----.

1. 필수업무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4. (생략)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1호의 재난 지정에 관한 사항

2.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2. 필수업무 종사자 -----

3. ---- 필수업무 종사자 ----

4. (현행과 같음)

제8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필수업무 종사자 -----
-----.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
----- 필수업무 종사자 -----

구축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222호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조정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2.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2년 6월 24일

남 동 구 청 장

○ 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22. 1. 1.
2. 결 정 내 역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3. 대 상
 -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필지

[단위:원/m²]

토지소재지	당초지가	조정지가	비 고
구월동 643-1	346,800	359,200	상향조정
구월동 688-27	484,000	503,300	상향조정
구월동 756-2	277,300	321,500	상향조정
구월동 799	501,600	521,600	상향조정
운연동 300-4	173,800	205,100	상향조정
수산동 67-5	89,900	101,400	상향조정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6152, 6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22-5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2. 7. 5.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6. 20. ~ 2022. 7. 4.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일반음식점	2021-0203167	하루닭	홍*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35, 칼리오페 1층 A102호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06-15	2022-07-05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2. 7. 4.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
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22년 6월 20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22-52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아래 사업체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2. 7. 5.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제3항
4. 공 고 기 간 : 2022. 6. 20. ~ 2022. 7. 4.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집 단 급식소	1999 -0199447	수피아 어린이집	박**	인천 남동구 성리로 53(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12-31	2022-07-05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2022. 7. 04.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2년 6월 20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53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2. 7. 7.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6. 22. ~ 2022. 7. 6.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일반음식점	2018-0202113	아페리온 스넥치킨	오**, 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23, 8층 A-801(아페리온스파랜드 일부)호 (서창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06-20	2022-07-07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2. 7. 6.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
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22년 6월 22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5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7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37번길 3 (간석동) 외 2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재천로39번길 23-13 (서창동)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3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37번길 3 (간석동)	2009.11.16	주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8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06.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주안로237번길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94-1, 94-8, 94-16, 94-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5번길 19 (구월동)	2009.11.16	당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06.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당좌로5번길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9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74번길 26(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74번길 26 (간석동)	2009.11.16	석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7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06.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74번길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6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걸재천로39번길 23-13 (서창동)	2022.6.17.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88번길 44-73 (고잔동)	2022.6.17.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지로 1 (간석동)	2022.6.17.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퍼펙트자동차공업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23 (간석동)	2022.6.17.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5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97 (논현동)
- 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21번길 16 → 앵고개로621번길 14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97 (논현동)	2009.11.16.	옛날에 은이 나왔던 마을이 있었다는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22.6.2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은봉로 297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97을 건물번호로 부여	

남동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21번길 16 (고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21번길 14 (고잔동)	2009.11.16.	앵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2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6.2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앵고개로621번길 1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4를 건물번호로 부여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5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등에 따라 건물 등에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남 동 구 청 장

- 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21번길 20 → 앵고개로621번길 1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 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21번길 20 (고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21번길 16 (고잔동)	2009.11.16.	앵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2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6.2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앵고개로621번길 1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을 건물번호로 부여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5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새남촌 공영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새남촌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807, 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년 6월 23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48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새남촌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3. 사업규모(변경)

- 기정: 주차장 면적 $A=14,300\text{m}^2$
- 변경: 주차장 면적 $A=14,300\text{m}^2$ [부대시설(공중화장실) 신축 연면적 $A=20\text{m}^2$]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남동구청장(도시재생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실시계획 고시일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남촌동)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357-1	차	5,358	5,358	남동구청				
2	363-2	전	4	4	국토부				
3	366-2	도	15,647	2,102	국토부				
4	476-1	도	44,023	628	국토부				
5	480-1	차	1,915	1,915	남동구청				
6	482-1	차	3,210	3,210	남동구청				
7	493-1	도	5,708	382	국토부				
8	494-11	도	475	224	국토부				
9	598-2	도	1,314	13	국토부				
10	598-43	도	241	241	국토부				
11	598-57	도	2,968	223	국토부				
소 계			14,300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6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만월1호 공영주차장)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만월1호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교통행정과 ☎032-453-2687, 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년 6월 23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0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만월1호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3. 사업규모

- A=912.2㎡ [철골조주차장(지상1층 2단, 53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교통행정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1	만수동	840	차	912.2	912.2	남동구청	-	
합 계				912.2	912.2			